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5 - 34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다양한 이유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이나 중도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부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명시함(안 제4조)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적정한 보조금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도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62, 팩스 032-440-87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3.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감독 등)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시행일 : 2016.3.28.] 제31조

부칙 <법률 제13228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학생 수업료 및 급식비, 교직원 인건비, 실험·실습 경비

나.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제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교직원 수 동결

2) 학생 수 및 수업료 동결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교직원 인건비	957,600	986,328	1,015,917	1,046,394	1,077,785	인건비 매년 3% 증액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517,689	517,689	517,689	517,689	517,689	동결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1,080,819	1,080,819	1,080,819	1,080,819	1,080,819	동결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535,757	551,829	568,383	585,434	602,997	급식비 매년 3% 증액
실험·실습경비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동결
계	3,136,865	3,181,665	3,227,808	3,275,336	3,324,290	

※ 기준 단가의 변화에 따라 추계 결과 변경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교육위원회 이 강 호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입	-	-	-	-	-	-	-
	소계						
세출	교직원 인건비	957,600	986,328	1,015,917	1,046,394	1,077,785	5,084,024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517,689	517,689	517,689	517,689	517,689	2,588,445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1,080,819	1,080,819	1,080,819	1,080,819	1,080,819	5,404,095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535,757	551,829	568,383	585,434	602,997	2,844,400
	실험·실습경비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소계	3,136,865	3,181,665	3,227,808	3,275,336	3,324,290	16,145,964
재원 조달		3,136,865	3,181,665	3,227,808	3,275,336	3,324,290	16,145,964
국 비							
시비	소 계	3,136,865	3,181,665	3,227,808	3,275,336	3,324,290	16,145,964
	일반회계						
	특별회계	3,136,865	3,181,665	3,227,808	3,275,336	3,324,290	16,145,964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참고 사항

- 인건비 및 급식비 : 매년 3% 증액